

학생 상벌 규정 시행 세칙

제정 : 1997. 03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교학팀(950-5404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1조의2(적용범위)	제2조(포상의 종류와 대상)	제3조(포상의 발의)
제4조(징계의 종류와 대상)	제5조(징계의 발의)	제6조(징계자에 대한 특별지도)	제7조(심의절차)
제8조(징계해제)	제9조(통보)	제10조(개정)	제11조(기타사항)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따라 학생 상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제1조의2(적용범위)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되, 학업성적, 출결 사항 및 미등록 등의 학사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.(개정15.02.06)

제2조(포상의 종류와 대상) 포상의 종류는 학업상, 근면상, 공로상, 문화상, 모범상으로 한다.

1. 학업상 : 재학기간 동안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학생과 각 학과(전공)에서 최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(개정 06.6.22).(15.02.06)
2. 근면상: 학년 중 근면하여 결석이 없고 평소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수여한다.
3. 공로상: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통솔력이 있어 학교 발전과 학생자치활동에 기여한자에게 수여한다.
4. 문화상: 각 부문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.
5. 모범상: 학교 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.

제3조(포상의 발의) 위 제2조의 포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학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.

1. 공적조사 1부
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3. 전공주임 의견서 1부(개정2003.3.1)

제4조(징계의 종류와 대상) ① 징계는 경고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벌한다.(개정08.6.2)

1. 교내에서 풍기를 문란케 한 자
2.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
3. 타인에게 폭행한 자
4.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
5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자
6. 불미한 이성관계를 가진 자
7. 미신적신비주의, 사이비 이단 사실을 신종 선전하는 자
8. 기타 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한 학생
9. 인터넷공간에서 언어폭력 및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(신설2003.3.1)
10. 유흥업소 출입 및 음주, 흡연한 학생(신설2008.6.2)
11. 과다노출한 학생(과다노출이란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도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)(신설2008.6.2)

제5조(징계의 발의) 위 제4조의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학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(개정06.6.22).

1. 사건 경위서 1부
2. 본인 진술서(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) 1부
3. (삭제06.6.22)

제6조(징계자에 대한 특별지도)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의 지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(개정2003.3.1).

제7조(심의절차) 포상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포상 대상자
 - 가. 교학처장은 포상대상자로 제2조의 조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교무위원회에 발의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다(개정 06.6.22)(개정 15.02.06)
 - 나. 교학처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15.02.06)
2. 징계 대상자
 - 가. 교학처장은 제4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 - 나. 교학처장 또는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학생, 지도 교수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(개정 06.6.22).
 - 다. 교학처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징계해제) 지도교수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징계 학생에 대한 징계 해제 의견서가 제출되면, 교학처장은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(개정06.6.22)

제9조(통보) 교학처장은 포상 또는 징계 사실을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(개정06.6.22).

제10조(개정)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기타사항)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의 결의로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(개정 06.6.22)(개정15.02.06)

부 칙

1. 삭제(개정15.02.06)
2. (시행일) 이 세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